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16.1.27.>

제 호

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(일반용, 사용승인 동의용)

부분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	상호(명칭)		주요용도		
	소 재 지	(전화 :)			
	구 조	지하 층, 지상 층, 연면적 ㎡, 바닥면적 ㎡, 개동			
	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				
소 유 자	성명(기관 또는 법인명)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:)			
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	상호(명칭)		등록번호	제 호	대표자
	소 재 지	(전화:)			
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	상호(명칭)		등록번호	제 호	대표자
	소 재 지	(전화:)			
소방시설공사업자	상호(명칭)		등록번호	제 호	대표자
	소 재 지	(전화:)			

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	시설	해당 세부설비명	신고설비	완공여부
	소화설비			
	경보설비			
	피난설비			
	소화용수설비			
	소화활동상설비			
	방염물품			
	실내장식물불연화			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소방본부장
소방서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